

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 : 정병용 의원

제출일 : 2024. 2. .

1. 제안이유

-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,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향상하고 시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(안 제13조제1항)
-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침해 예방, 권리 옹호 등의 사무 수행을 위한 권익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18조)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한종수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침해 예방 및 권리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권익지원센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를 정비하여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검토 결과,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됨.